

#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서
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이하 "갑"이라 한다)과 \_\_\_\_\_(이하 "을" 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자가품질검사 위탁 계약(이하 "본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본 계약은 화장품 및 그 원료의 안전위생과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(화장품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) 및 제12조(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)에 의거 "을"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화장품에 관한 품질검사를 "을"의 의뢰에 따라 "갑"이 수행함에 있어서 "갑"과 "을"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시험항목의 범위)** 본 계약에 따라 "갑"이 수행하여 할 품질검사의 범위는 "을"이 위탁하는 화장품별 시험검사항목으로 한다.

**제3조 (계약기간)** 본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 단,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완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만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**제4조 (의무)** ① "갑"은 "을"이 화장품 자가품질검사 위탁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"을"에게 휴·폐업 또는 기타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"을"은 휴·폐업신고서 사본 및 기타 변동내용을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러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한 어떠한 책임도 "갑"에게 없음을 확인한다.

**제5조 (절차)** ① "을"은 화장품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 화장품 시험·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위탁검사에 필요한 시료와 함께 "갑"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"갑"은 약정한 기일 내에 "을"이 위탁한 검사를 완료하고, 그 시험·검사성적서를 "을"에게 교부하되 "을"이 요구할 시에는 팩시밀리 또는 전화, 속달우송 등으로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
**제6조 (수수료)** 수수료는 "갑"의 검사항목별 수수료 기준에 따르고, 위탁검사 신청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나 "갑"과 "을"이 별도로 약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
**제7조 (시험분석방법)**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"을"이 기타의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"갑"과 "을"이 상호 합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.

**제8조 (처리기간)** 검사의 처리기간은 “갑”의 검사항목별 처리기간에 따른다. 단, 검사업무 처리기간에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으며, 천재지변·시설·장비의 고장 및 검사업무 과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“을”에게 통보하여 양해를 구함으로써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9조 (의견 결정 등)** ① 계약사항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위반자가 부담한다.  
② “을”이 “갑”에게 위탁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쌍방간 의견이 상이할 경우 “갑”의 내부 규정 및 의견에 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10조 (준 칙)**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"갑"의 의뢰검사업무규정 화장품검사 업무세칙에 따른다. 다만, "갑"의 규정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"갑"과 "을"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.

본 계약은 "갑"과 "을"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"갑"과 "을"이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계약일자 : 20   년   월   일

"갑"   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
      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 
      원   장 :    ①

"을"   업 체 명 :  
      주   소 :  
      대 표 자 :    ②